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43 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정을호·이훈기·홍기원

이기헌 · 김병기 · 김남근

송옥주 · 김영환 · 문금주

김준혁 · 강유정 · 모경종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.

또한, 중앙당과 시·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·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,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 조제1항 후단 신설).

나. 중앙당과 시·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 서 150명으로 확대하고, 각 시·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전당원대회의 구성·권한 및 소집절차

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다.

제30조제1항 중 "100명"을 "150명"으로, "100인"을 "150인"으로 한다. 제38조제1항 중 "운영하여야 한다"를 "운영하여야 하며, 각 시·도당에 분워을 설치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헌에 관한 경과조치) 제2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당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당의 당헌에 전당원대 회의 구성·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8조(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	제28조(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		
의 기재사항) ① (생 략)	의 기재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	②		
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전당원대회의 구성·권한		
	<u>및 소집절차</u>		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		
③ • 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29조(정당의 기구) ① 정당은	제29조(정당의 기구) ①		
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			
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			
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			
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			
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.			
<후단 신설>	이 경우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		
	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		
	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		
	<u>할 수 있다.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	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		
제한) ① 정당에 둘 수 있는	제한) ①		
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	<u>15</u>		
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ㆍ	0명		

도당에는 총 <u>100인</u>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·운영) 기 [정치자금법] 제27조(보 조금의 배분)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(이하 "보 조금 배분대상정당"이라 한다) 은 정책의 개발·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 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(이하 "정책연구소"라 한다)를 설치·

② (생 략)

운영하여야 한다.

<u>150 ਦ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・운영)
①
운영하여야 하며, 각 시·도당
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(현행과 같음)